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20. 7.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47호로 2020년 7월 10일 김길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다. 개정된 상위법령명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0. 7. 10. ~ 7.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개정된 상위법령명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